



경상남도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공지사항(직인생략)

우)51305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312(구, 회성동 470-39) 전화번호 : 055)253-2073~4 / 팩스번호 : 055)253-2075

사업자 여러분!

중동국가 전쟁 여파로 연료비와 차량 정비물품 인상 등으로 이중고를 겪으시면 서도 산업물류의 역군으로 묵묵히 참고 사업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사업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전자 보수교육 (기관: 교통문화 연수원), 사업용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기관: 한국교통안전 공단) 예약이 어려운 회원께서는 협회로 연락 주시면 예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분들을 위한 각종 법률상담, 병원과의 협약, 화물복지재단 지원사업 항목 확대와 지원금 증액은 물론 차량 대·폐차 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중고차 차령 5년 이내로 대차토록 법령을 개정 하는 등의 내용으로 7~8월 공지물 발송하오니 잘 숙지 하신 후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사업자의 업무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및 어플 개설 안내

협회에서는 현재 각종 공지사항을 우편 방식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빠르게 실시간 공유를 하기위해 앞으로는 홈페이지 및 어플에 게재하기 위해 단계 별로 준비 하고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 앱을 설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이용
Play 스토어 창에 경남개인(용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협회를 검색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주소는
w w w.ksndyd.kr



2026년도 보수교육 관련 안내 / ★온라인 예약시 용달화물로 표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 (운수종사자 교육)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관련 일정을 안내 하오니 해당 운전자께서는 연 1회 꼭 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면제자는 2025년도 10월 31일을 기준, 사업용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와 동시에 협회에 취업신고 한 운전자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 ·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와 운수종사자와 2026년도 화물운송종사자격증(발급처: 교통안전공단발급)는 면제됨. <개정 2018. 12. 31.>

2026 화물업종 보수교육 일정

교육장	월	교육일자	비고
창원시 (경남교통문화연수원) 현재 접수중	7월	20	○사전 교육예약 신청 - 인터넷홈페이지, 휴대폰 검색 "경남교통문화연수원" ○보수교육 4시간 - 오전: 9시 ~ 13시 - 오후: 14시 ~ 18시 ○준비물 - 화물운전자자격증 - 필기구
	9월	7, 12, 13, 14, 28	
	10월	12, 13, 17, 18, 26, 27, 31	
	11월	1, 9, 10, 14, 15, 16, 23, 24, 30	
	12월	1, 2, 5, 6	
진주시 (진주시평생학습관 다목적강당)	7월	14, 15, 16, 27, 28, 29	○접수시간 09:00~09:20 ○보수교육 4시간 - 오전: 09:30 ~ 13:30
거창군 (거창문화원 상설미홀)	8월	28	○접수시간 08:00 ~ 08:30 ○보수교육 4시간 - 오전: 09시 ~ 13시
거제시 (거제청소년수련관 공연장) 8/3 접수가능	9월	4	○접수시간 09:00~09:20 ○보수교육 4시간 - 오전: 09:30 ~ 13:30

※본 일정은 현지교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사전 경남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일자, 접수 시작일, 접수시간, 장소 등을 꼭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안내

부가세 정기 신고관련, 직접 또는 세무 대행기관을 통해 기간 내 빠짐없이 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사업자 : 제1기 확정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026.1.1.~6.30)

법률상담 관련 업무협약 안내 / ☎ 055-755-0555

회원 분들의 법률상담을 위해 지난 4.20일자 아래의 덕망 있는 법률 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사오니, 교통사고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형 사건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아래 ◆

- 사무소명 : 변호사 강대승, 강성중법률사무소

- 위 치 :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4층

- e-mail : law.sj.kang@gmail.com

- 전 화 : 055)755-0555, 055)755-0333, 팩스 055)758-0222

- 참고사항 : 진심을 담아 듣고 길을 명확히 제시하며 끝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강대승(아버지), 강성중(아들) 법률사무소임

2026년도 화물복지재단 복지사업관련 안내 / 02-761-0200

사업용 화물운전자 복지사업(출생·학업·의료·교통사고 생계·법률구조·기타 지원) 관련 내용에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 하신 후 해당 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각종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출생축하 지원사업 신설됨

☎ 업무시간 : 평일 09시부터~18시 까지

홈페이지 : www.fordrivers.or.kr

화물자동차의 차령 완화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제57조제1항) 현행 3년 이내(자동차 등록증상 최초 등록일자 기준) 차량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하던 사업자의 차량이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무조건 신 차량 또는 3년 이내 중고차량으로 대체해야 했으나, 2025. 12.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21190호)되어 2026.6.3.일부터 자동차등록증상 최초등록일자 기준 5년 된 중고차량도 등록이 가능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 차 등 록 증					
제202607-123456호			최초등록일자: 2021년 08월 1일		
①자동차등록번호	경남90자013호	②차종	소형화물	③용도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안내

사업도중 차량 교체를 위해 본인이 방문 할 경우 아래의 대·폐차의 신청 구비서류만 준비해서 오시고 혹 기타 사정으로 대리인에게 위임을 할 경우 일반용 인감증명서 1통(용도: 차량대폐차 위임용)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폐차의 신청 구비서류

1. 폐차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7일 이내 교부된 것)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2. 대차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7일 이내 교부된 것) 및 자동차등록증(신규 제작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사본 각 1부.
3. 친환경 화물자동차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확인서 1부,

(협회 방문시: 현장 작성, 대리 방문 시: 서식을 팩스로 받아 사전작성 후 제출)

※ 폐차(현 사업용 차량)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보다 대차(구입하는)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 대차되는 차량은 불가능

※ 대폐차시 대차 차량의 출고된 차령이 5년 이내(필증 발급일 기준)인 경우 대차 가능 함.

☎ 제3조(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 발체

③ 법 제3조제7항제1호 다목에 따라 허가받은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친환경 화물자동차로만 대폐차를 허용한다.

④ 친환경 화물자동차 이외의 화물자동차는 친환경 화물자동차로 대폐차를 허용한다. 단, 친환경 화물자동차로 대차한 이후 대폐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고지사항 : 차량 대·폐차 신청은 사업자 본인 방문을 원칙으로 하나, 기타 사정으로 위임 시 서류가 완벽한 경우 대리 및 기타의 방법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 협회에서는 대·폐차 필증 발급 신청 당일 차주 또는 대리인에게 친환경 화물자동차로 대차한 이후

① 다시 친환경 화물자동차가 아닌 (예: 경유, LPG) 차량으로 대차가 불가

☎ 고지사항 : 기존 경유 차량에서 LPG 차량으로 대차 한 경우

빠른 시일 내 해당 카드 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LPG 연료 카드로 변경 신청 후 수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지사항 :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하동군, 고성군 지역 사업자가 차량을 대폐차 하고자 할 경우 전기차 또는 LPG 차량으로만 대체가능함.

대기관리권역법 관련 경유자동차의 사용제한 안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 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 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하·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2024.1.1.부터는 신규허가, 차량 대·폐차가 불가 합니다만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을 제외한 지역은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가능하오니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환경부 교통환경과-3298(2023. 12. 5)질의에 대한 회신, 끝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권역	지역 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자격유지 검사 안내 / 검사 관련 문의 및 예약 콜센터 (1577-0990)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유지 검사보다 의료적성검사가 편리하다고 단순 판단하시는 운전자분들이 일부 있으나, 공단 검사 자를 대상으로 확인한바, 공단 검사가 적합 판정률이 높다고 하오니 강화된 내용은 참고 하신 후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강화된 의료적성검사 시행 : 2025.12.5

(1) 검사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제2호다·라목('18.12.31)개정】
 • 명 칭 : 자격유지검사
 • 대 상 : 사업용 화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주 기 : 65세 이상 매3년, 70세 이상 매1년
 최초-법정 생년월일 기준 3개월 이내, 이후-공단 수검일자 기준 3월 이내,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임

(2) 검사 시행

검사구성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37호 ('17. 12. 29)에 명시
검사방법	검사예약→검사접수→검사시행→교정교육→판정표교부
검사판정	적합·부적합 판정 / 부적합자는 14일 이후 재검사 가능
검사시간	약 2시간 내외
검사예약	홈페이지(www.kotsa.or.kr) 또는 콜센터 (1577-0990) 예약
검사비용	20,000원 (부가세포함)

※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과징금 60만원,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오니 기간 내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 창원 검사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지역본부)

- 주소 : 우)51391 창원시 의창구 차릉로 48번길 44 창원스마트업타워 2층
 - 전화 : 055)270-0550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업무에 종사 할 경우 행정처분 받게 되므로 14일 이후 재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후 운전업무에 반드시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적성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해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적성검사 시행병원 지정제 도입 // 1회 방문으로 검사 가능한 병원

병원명	주 소	직통전화	검사비용	비 고
진주 반도병원	진주시 남강로 701	055)749-0250	75,000원	- 신분증 지참 - 일정시간 공복유지 (사전문의) - 접수시간 14~16시(협조사향) - 검사 (당일 접수순임)
진주 고려병원	진주시 동진로 2	055)751-2421		

☞ 법정 생일 기준 3개월 이내 자격유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됨.

주정차 · 단속관련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고정형·이동형 CCTV)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며 나아가 선진 주정차 문화의 정착에 그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사오니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자체 문의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창원시 주정차단속(CCTV)문자알림서비스 참조

창원시 주정차단속(CCTV) 문자알림서비스

<http://parkingsms.changwon.go.kr/parkingsms/>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신청안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유의사항 (꼭 읽어보세요!)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고정형·이동형 CCTV)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며 나아가 선진 주정차 문화의 정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단속 시스템 특성상, 신호 대기 또는 주행 중에도 번호 오인식으로 문자가 발송 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훼손이나 날씨,전재지변으로 번호 인식 오류가 발생해, 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 11가1111 → 11가1117)
- 문자알림서비스는 1일에 1회만 제공됩니다.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 1대 차량당 핸드폰 번호는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차주 여부와 관계없음)
- 동의한 개인정보는 타 지자체와 서비스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번 : 055)

- 의창구 경제교통과 ☎ 055-212-4441
- 성산구 경제교통과 ☎ 055-272-4441
-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 055-220-4441
-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 055-230-4441
- 진해구 경제교통과 ☎ 055-548-4441

주정차단속(CCTV)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수정/탈퇴



-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문자 미수신 시에도 과태료 부과됩니다.
-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 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장단속, 안전신문고는 문자알림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이용하실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서비스 가입

서비스 수정

서비스 탈퇴

에스엠지 연세병원 업무협약 안내 / ☎ 055)243-0100

우수한 의료진과 특성화 시스템 구축, 정밀진단 및 안전지향 치료 서비스, 고객감동 서비스, 연구하는 병원, 끊임없이 성장하는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 에스엠지 연세병원은 2001.1월 개원, 2002.6월 종합병원 승격, 인제대 부산백병원·서울 대학병원 협력 체결, 뇌신경, 뇌혈관, 심장혈관, 인공신장, 간, 담도, 대장 클리닉, 척추 센터, 관절센터, 소화기 내시경, 호흡기 센터, 소아아동센터, 이비인후과 클리닉, 정신 건강 클리닉, 여성 클리닉, 직영 장례식장, 종합건강검진 센터를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3·15대로 76에 위치 한 종합병원입니다.

2026년도 화물복지재단 복지사업 분야 건강검진 지정된 에스엠지연세병원과 지난 제2회 이사회(2026.4.17.)승인을 받고 4.22일자 회원 분들의 의료복지 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의료법인 에스엠지 연세병원
합포의료재단 SMG YEONSE HOSPITAL

혈관센터

혈관치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혈관초음파 및 영상중재시술(인터벤션) 가능

당뇨발 혈관중재술, 투석혈관치료 등
혈관 질환의 정밀한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250926-중-198823 | 광고

지역응급의료센터

연중무휴 운영 중!

365일 24시간

“심장·뇌혈관 응급중재시술 가능”

| 대표전화 | 055.243.0100
| 홈페이지 | www.smgys.co.kr
| 주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76

2026. 7

경상남도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